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이원택 · 오세희 · 윤준병
박희승 · 송옥주 · 이성운
한병도 · 이개호 · 임미애
전용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·관리할 수 있고,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(토지, 물건, 권리)을 매수할 수 있음.

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,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·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전단 중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·군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·관리) ① ~ ③ (생략)	제32조(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·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, 제70조, 제71조, 제74조, 제75조, 제75조의2, 제76조, 제77조,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④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·군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